

 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3. 10.(화) 배포</p>	
보도일	<p><b>2020. 3. 11.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3. 11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</b></p>		
담당과	대입정책과	담당자	과 장 송근현 (☎ 044-203-6368) 사무관 김재극 (☎ 044-203-6367) 사무관 최인성 (☎ 044-203-6365)

##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

- ◆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: 「고등교육법」
- ◆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: 「고등교육법」 등
- ◆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(월)부터, 「고등교육법」과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(목)부터,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.

○ 이번 개정은 ‘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\*(2019.11.28.)’과 「고등교육법」 개정(제34조의6 신설\*\*, 2019.12.10.)의 후속 조치이다.

\* 사회통합전형 도입·법제화,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

\*\*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○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, 일부개정법률안(2건)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‘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(법 제34조의7)’과 ‘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(법 제34조의3)’이다.

○ 우선, 장애인·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(사회적배려대상자)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,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.

※ 구체적인 비율(각각 10% 이상)은 법 개정 이후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 명시할 예정

○ 다음으로,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.

□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「고등교육법」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,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‘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\*를 신설’한 것이다.

\* 법 제9조 7호, 제13조 제3항, 제14조 제13항, 제14조의2 제12항

○ 구체적으로는,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·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, 위반 시 벌칙\*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.

\* 등록말소(폐지·과외교습 중지),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□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(2019년 12월)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(영 제 35조의2)에 명시한 것이다.

-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,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,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.
-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, ‘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(2019.11.28.)’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- 【붙임】 1.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법률안  
 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 
 3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



**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**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 본문 중 “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”을 “제2조에 따른 학원·교습소를”로, “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”를 “이에 취업할 수 없고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”로 한다.

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7(사회통합전형의 운영)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(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)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상자, 모집비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한정한다)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모집비율, 선발방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학사정관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사람 및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

이 경우 대상자, 모집비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 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한정한다)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모집비율, 선발방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의 제목 중 “결격사유”를 “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 결격사유”로 하고,  
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7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 
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  
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.

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⑬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습소를 설립·운  
영할 수 없다.

제14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⑫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가  
될 수 없다.

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원 설립·운영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원의 설립·운영의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강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원 강사로 교습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교습소 및 교습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의 설립·운영 신고를 하는 교습자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p>1. ~ 6의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7.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강사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14조(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 등) ① ~ ⑫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9조(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 결격사유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8. ----- -----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강사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.</p> <p>제14조(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 등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습소를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의2(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) ① ~ ⑪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설립·운영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14조의2(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⑫ <u>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다.</u></p>

**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**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입학허가의 취소) 법 제34조의6 전단에서 “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
2.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35조의2(입학허가의 취소) 별</u>  <u>제34조의6 전단에서 “대학의 장은</u>  <u>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를 받은 학생이</u>  <u>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</u>  <u>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</u>  <u>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</u> 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”란</u> 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 <u>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.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</u>  <u>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</u>  <u>제출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</u>  <u>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</u></p> <p><u>3.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</u>  <u>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</u>  <u>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</u>  <u>학칙으로 정하는 경우</u></p>